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25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 안상훈·박덕흠·조정훈

우재준 • 김미애 • 조경태

이종욱 • 박상웅 • 박수영

한지아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 기금소진 예정으로, 현 20-30대 청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88조).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을 "제1항에 따른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기는 70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제88조제3항 중 "45에"를 "65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90으로"를 "130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4 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연금 운영 전 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 기재정균형 유지) ① (생 략) 기재정균형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 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 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u>국민연</u> -----제1항에 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 따른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 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 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 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 ③ (생략)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전등) ①·② (생략)
 -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 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u>45에</u>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 ⑤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장기는 70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에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65</u> 에
,
4
<u>130으로</u>
⑤ (현행과 같음)